

국제협력센터 운영 규정

□ 제정 : 2020. 3. 13.

□ 개정 : 2020. 9.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 국제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01.>

제2조(설치목적) 본 센터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세계화 대학으로서의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교육 분야의 개방에 따른 대학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대학과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며, 세계화를 선도하는 교두보로서 본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실질적인 해외 문화 및 지식교류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본 센터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대학으로의 졸업생 편입에 관한 업무
2. 해외대학과의 교환학생에 관한 업무
3. 해외대학과의 공동프로그램 개발 및 협약에 관한 업무
4. 유학준비반 운영에 관한 업무
5. 외국인 유학생 관리 업무
6. 기타 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4조(조직) ① 본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는 센터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② 본 센터에는 직원, 조교를 둘 수 있다.

③ 본 센터의 운영을 위해 국제협력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09.01.>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및 부센터장)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 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학생의 교류 <신규 2020.09.01.>

제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매대학'은 본교와 정식으로 협약이 체결된 국외 소재 대학
2. '유학생'은 국외대학에서 수학하는 본교 학생 또는 본교 학과로 입학하여 수학하는 외국 학생
3. '교환학생'은 본교와 국외대학이 동일수로 교류하는 학생
4. '인턴학생'은 본교 또는 국외대학에서 상호 파견하는 학생
5. '연수생'은 본교 또는 국외대학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하는 학생

제7조(교류기간) 학생의 교류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교류학생의 수) 제6조 각 호의 학생 수는 호혜의 원칙에 따른다.

제9조(등록금 납부) 교류학생의 등록금은 소속대학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학점인정) 국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18조를 따른다.

제11조(교류학생의 선발 및 관리) 교류학생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협력센터운영 위원회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제협력센터에서 담당한다.

제 4 장 본교 학생의 국외대학 수학 <신규 2020.09.01.>

제12조(지원자격) 본교 한 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으로서 국외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단,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1. 국외에서 수학이 가능한 언어능력을 갖춘 자로 다음 각 목 중 한 개 이상 해당하는 자
 - 가. 영어능력 TOEFL(CBT) 150점 이상 또는 TOEIC 500점 이상인 자
 - 나. 중국어 능력 HSK 3급 이상 또는 CPT 300점 이상인 자
 - 다. JLPT N4 이상이거나 또는 JPT 460 이상인 자
 - 라. 동일 언어권 국가 1년 이상 연수 및 거주경험이 있는 자
 - 마. 국제협력센터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국외에서 수학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바. 취득학기별 학업성적이 12학점 이상 취득과 취득 평점이 3.0 이상인 자단, 1학년 1학기 재학생의 경우 6주 차까지의 출석률이 90% 이상인 자로 한다. (단기연수생 제외)
- 사. 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6. 보호자 동의를 받은 자
7. 개인경비로 단기연수를 시행하는 경우 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서와 연수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부서에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선발하며, 이 경우 국제협력센터운영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제13조(수학신청) 국외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협력센터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선발 및 수학허가) 국제협력센터장은 국외대학 수학을 신청한 본교 학생의 수학능력 여부를 국제협력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개시 전까지 국외대학 총(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수학기한) 국외대학 수학 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등록금 납부) 국외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가 정하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액은 대학이 학기별로 정하는 금액에 따른다.

제17조(교과목 이수) 국외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은 전공 및 교양 교과목으로 인정하되,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8조(학점인정) ① 국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 수학 학기와 동일한 본교 재학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 ② 국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정규 학기당 18학점까지 인정한다.
- ③ 국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장학생 선발에 관한 학점인정 및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
- ④ 국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국외에서 취득한 학점임을 표기한다.

제19조(수강신청) 국외대학 수학의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수학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며, 본교의 수강신청은 국외대학 수학지원서로 대체한다.

제20조(국외대학 수학의 취소) 국외대학 수학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학 개시일 전까지 국외대학 수학취소원을 본교 국제협력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담당부서) 본교 학생의 국외대학 수학에 관한 업무의 담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대학 수학생의 선발·허가·파견 등에 관한 업무는 국제협력센터
2. 국외대학 수학생의 취득학점 인정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한 업무는 학적과

제 5 장 외국학생의 본교 수학 <신규 2020.09.01.>

제22조(지원자격)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외국학생은 소속대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23조(수학신청) 외국학생의 소속대학(교)장은 본교에서 수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명단과 관련 서류를 학기개시 전까지 본교 국제협력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수학허가) 국제협력센터장은 본교에서의 수학을 신청한 외국학생의 수학허가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개시 전까지 외국학생의 소속대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등록금 및 수강료 등) ① 본교에서 수학허가를 받은 외국학생은 협정체결된 교류인원에 한하여 수학기간에 대한 등록금을 소속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협정이 체결된 인원수를 초과하는 외국학생은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외국소속의 학생은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수강신청) 외국학생의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본교가 정한 규정 또는 절차에 따른다.

제27조(수학허가 취소) 수학허가를 받은 외국학생이 수학기간 중 본교의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수학기간) 외국학생의 수학기간은 소속대학(교)와 체결한 개별협정에 따르며, 개별협정에 수학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25조 제3항의 경우에는 수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취득학점 처리) 외국학생의 취득학점은 본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하고 수학기간 종료 후 소속대학(교)장에게 통보한다.

제30조(학생증 발급) 본교에 수학이 허가된 외국학생에게는 학생증을 발급한다.

제31조(시설물 등 이용) ① 본교에 수학하는 외국학생은 본교 학생과 동등하게 어학실, 도서관, 실험·실습실 등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외국학생 소속대학(교)장과의 협정에 따라 필요 시 본교 시설의 사용료나 실험·실습비 등을 별도로 징구할 수 있다.

제32조(담당부서) 외국학생의 본교 수학에 관한 업무의 담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학생의 본교 선발·허가·파견 등에 관한 업무는 국제협력센터
2. 외국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하는 경우 필요한 관련 업무는 국제협력센터
3. 외국학생의 본교 취득학점 인정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한 업무는 학적과

제 6 장 국제협력센터 운영위원회 <신규 2020.09.01.>

제3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3. 총장은 본교 일반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한다.
4. 간사는 회의 진행 및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34조(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해외대학으로의 교환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2. 해외대학과의 공동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해외대학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09.01.>
5. 유학준비반에 대한 사항<신규 2020.09.01.>
6. 규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7.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35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6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7 장 재 정 <신규 2020.09.01.>

제37조(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 회계로 충당한다.

제38조(예산 및 결산) 본 센터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 대학의 회계기준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해산) 본 센터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

제 8 장 기 타 <신규 2020.09.01.>

7-1-23 국제협력센터 운영 규정

제13조(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